

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1. 자치법규명

연 번	안 건 명	발의자
1	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2	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3	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4	양산시의회의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5	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박일배 의원 대표발의
6	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	김혜림 의원 대표발의
7	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	최순희 의원
8	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	최복춘 의원
9	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곽종포 의원대표발의
10	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	김지원 의원 대표발의
11	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	최순희 의원

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
※ 전화 : 392-8622, 팩스 : 392-861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 치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